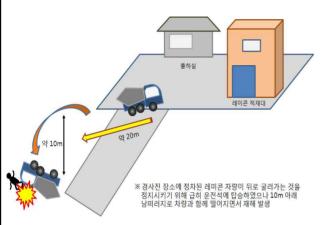
# 레미콘 차량이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짐

#### 재 해 개 요

'14년 7월 전남 여수시 소재 레미콘 사업장에서 레미콘 차량 운전원인 피재자가 차량을 정차한 후 이동하던 중 차량이 내리막길로 굴러가는 것을 목격하고 차량을 정지시키기 위해 차량 운전석으로 급히 탑승하였으나, 차량과 함께 도로를 벗어나 10m 아래로 떨어지면서 사망한 재해임

#### 재해상황도





재해상황도

재해 현장

### 재해발생상황

- 피재자는 차량의 시동을 켠 상태로 경사로에 레미콘 차량(콘크리트 믹스 트럭)을 정차한 후 출하실로 이동함
  - 재해발생 레미콘 사업장은 주도로에서 약 15미터 높이의 언덕에 위치하며, 차량은 경사진 출입구에 정차함(경사로 약 20도)
- 피재자가 레미콘차량이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차량을 정지하고자 운전석에 급히 탑승했으나, 도로경계석(높이 20cm)을 넘어 약 10m 아래 낭떠러지로 차량이 떨어지며 재해가 발생함
- 브레이크 고장 또는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차량이 경사로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추정(정기검사일 : 2014.05.29)
  - 차량 구름 방지를 위한 고임목은 미설치됨

#### 재해발생 원인

- 레미콘 차량을 정차시에는 평탄하고 지반이 견고한 장소에 정차하여야 하나, 경사진 장소에 정차를 함
- 레미콘 차량을 경사진 장소에 정차한 상태에서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브레이크 고장이나 풀림에 의한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실시함

#### 동종재해 예방대책

- 레미콘 차량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고,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 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경사진 곳에서는 차량바퀴에 고임목을 설치 하여 차량이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함
-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작 전 브레이크 및 클러치 등의 기능 등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
## 관련 법규

## ▶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(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)

- ①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,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해당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.
  - 1. 포크, 버킷,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둘 것
  - 2.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
  - 3.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. 다만,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,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운전위치에서 이탈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# ▶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(관리감독자의 유해·위험 방지업무 등)

- ② 사업주는 별표 3 【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작업 : 브레이크 및 클러치 등의 기능】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